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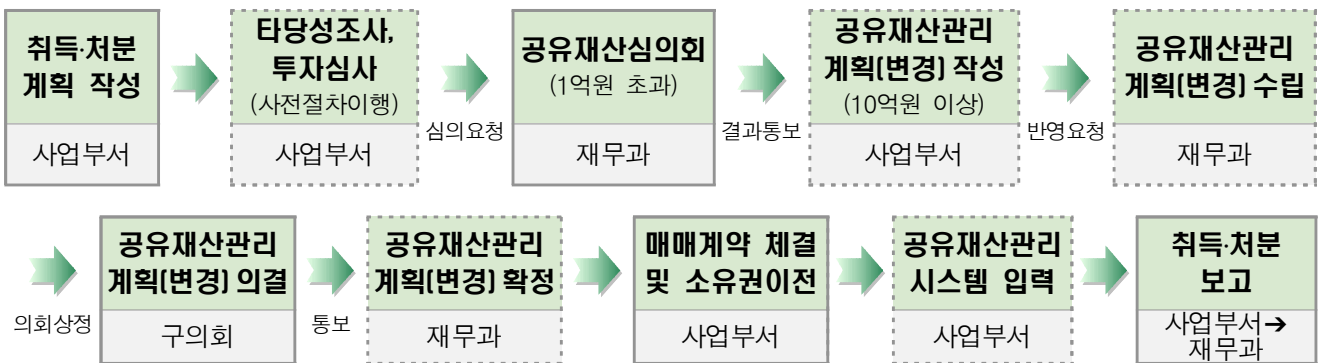
공유재산심의회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3조, 제4조

심의대상

구분	유형	심의대상기준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	기준가격 1억원 초과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그 밖의 처분	
수의계약 매각가격 사정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매각시 매각가격 결정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용도폐지, 용도변경	행정재산 → 일반재산, 일반재산 → 행정재산	330㎡ 초과 토지
회계간 무상이관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무상이관하는 경우	공공용, 공용사용에 한함
재심의	취득, 처분의 적정심의 받은 후 목적변경,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취득 :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처분 :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업무처리절차



적정여부 검토사항

- 관련근거의 적정성**
 - 근거법규의 요건 충족
 - 방침 수립 : 사무전결규정에 따라 관련 방침을 얻었는지 여부
- 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
 - 재산의 위치가 사업에 적절한 지
 - 다른 대체수단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지(의사결정 과정을 자세히 기재 필요)

-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 시급성 : 불요불급한 재산취득 지양
- 민원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 기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절차의 적정성

-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었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대상사업

최초수립	<input type="checkbox"/> 재산의 취득(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멸실 등) 1)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10억원 이상 2) 1건당 토지면적기준 :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
의결 후 변경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수립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

※ 기준가격

1. 토지 : 개별공시지가[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2. 건물 가.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